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언론보도 관련 피해자의 권리 및 언론사등의 의무 강화〉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54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정정보도청구시 피해자의 해당 모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 대상 청구 의무화	3
2. 정정보도청구 알림 표시 및 상호통보 의무신설	7
3. 조정신청시 피해자의 해당 모든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등 대상 조정신청 의무화	12
4.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 특칙 신설	16
※ 참고자료	
1. 언론중재위 사건 처리현황	25
2. 타 부처 및 협회 등 의견	27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장겸의원 등 13인

나. 제 출 일 : 2025. 3. 10.

다. 회부연월일 : 2025. 3.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악성 보도와 댓글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이에 따라 언론의 자성과 함께, 뉴스 콘텐츠를 유통하는 포털뉴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포털뉴스는 단순한 뉴스 전달자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함)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기사는 포털뉴스에서 검색 및 접근이 가능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은 포털사이트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하고 정정보도등의 청구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있음. 포털이 정정보도 청구를 받으면 이를 기사 제공 언론사에 통보하고, 해당 언론사는 동일한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그러나, 반대로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는 경우, 이를 포털사이트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포털뉴스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된 기

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함.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음. 이는 포털사이트보다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정정보도 청구가 더 많고, 언론사에게 정정보도등을 청구하는 경우보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피해자는 포털사이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따른 정보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음에도 포털뉴스를 통해 보도 및 유통되는 뉴스 기사에 대해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포털사이트 또는 언론사가 정정보도등을 청구받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자가 된 경우 상호 통보를 의무화하고,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

또한, 피해자가 언론중재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삭제요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포털사이트는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에 따른 임의 임시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조정기일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

이를 통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뉴스의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2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정보도청구시 피해자의 해당 모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 대상 청구 의무화(안 제15조)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피해자가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시 해당 기사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 혹은 매개 중인 경우 피해자에게 모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에 정정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u>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u>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u>해당</u>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	① ----- ----- ----- ----- ----- ----- ----- ----- -----정정의 대상인----- ----- ----- 인터넷신문 또는 인

현행	개정안
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u>청구할 수 있다.</u>	<u>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u> ---- ----- ----- ----- <u>청구하여야</u> 한 <u>다.</u>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언론보도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계속 보도·매개 중인 경우 양 측 모두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해당 언론보도를 보도·매개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청구를 재량규정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상의 무분별한 오보 확산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정정보도청구시, 해당 언론보도가 인터넷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보도·매개 중인 경우 피해자가 언론사등과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양 측 모두에 정정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여,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을 강화하고 오보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

에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청구시 해당 보도를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정정보도청구를 하도록 한바 피해자의 절차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련 협회 등의 신중검토 필요 의견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현행법상 피해자는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지 3개월 이내 또는 해당 언론보도가 있는 후 6개월 이내¹⁾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²⁾
- 2025.4.10. 기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가³⁾ 각각 12,513개, 308개⁴⁾에 달하는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언론보도를 매개하고 있는 모든 인터넷뉴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인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정보도청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법률에서 정해놓은바 인터넷신문 등에 관한 의무적 정정보도청구는 해당 과정에서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1)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로서,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함.

4)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시스템 중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 한편,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기사제공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상호통보하고, 이 경우 통보받은 사업자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안 제17조의2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인터넷신문 등에 관한 의무적 청구의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을 강화하고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한 오보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는 입장이나, 피해자의 절차상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또한, 아래 관련 협회 및 방송사업자 의견과 같이 피해자가 해당 언론보도를 보도·매개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인지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고, 조정절차의 지연을 발생시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정정보도등 신청 강제가 피해자의 사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고, YTN은 각 언론사와 계약 체결 포털사 전부에 정정보도등 청구 의무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의무 부과와 조정절차의 지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별첨 참고자료2 참조)

2. 정정보도청구 알림 표시 및 상호통보 의무신설(안 제17조의2)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나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반론·추후보도청구 포함)를 받은 경우, 해당 기사에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상대방(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제공 언론사)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u>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u>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u>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 중 일방이</u> ----- ----- ----- ----- ----- ----- ----- <u>상대방에게</u> ----- ----- -----.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	② -----

현행	개정안
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u>기사제공언론사도</u>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u>인터넷뉴스사업자 또는 기사제공언론사도</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정정보도청구 등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기사제공언론사에 그 청구내용을 통보하며, 해당 언론사는 동일한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그러나, 기사제공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를 받는 경우, 이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당해 기사제공언론사의 정정보도청구 등의 알림표시 의무도 부과하지 않아, 해당 뉴스를 접하는 일반 이용자가 명예훼손, 권리침해 관련 분쟁이 있는 언론보도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나 기사제공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상대방(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

제공 언론사)에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기사에 정정보도청구가 있음을 알려 일반 뉴스이용자가 명예훼손, 권리침해 관련 분쟁이 있는 언론보도임을 인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명예 및 법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현행	<피해자>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 정정보도청구등 알림표시 ○ • 기사제공 언론사 청구사실 통보 <기사제공 언론사(인터넷신문)> • 청구내용 수용 여부 결정 및 통보 (피해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제공 언론사(인터넷신문)> • 정정보도청구등 알림표시 x • 청구내용 수용 여부 결정 및 통보(피해자)
------------------	---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청구만으로 기사제공 언론사에 알림 표시를 강제할 경우 언론사에 청구사실만으로도 보도의 신뢰도 저하 등을 가져와 제도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 대상 정정보도 청구 알림 표시 의무는 이용자의 주의 환기로 온라인상 무분별한 오보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나, 기사제공 언론사의 정정보도청구 알림표시 의무화는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정정보도 청구만으로 언론사에 알림표시를 강제함에 따라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정정보도에 해당되는 보도로 오해 소지가 있어 제도 남용 여지가 있음.

- 또한, 대부분의 뉴스가 소비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네이버 등 뉴스포털)에 정정보도청구 알림 표시 의무가 있으며, 이외 네이버는 정정·반론·추후보도 카테고리를 별도 구성하여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청구 신청 관련 알림표시는 청구 사실만으로 보도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언론계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각계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국신문협회는 알림표시의무와 관련하여 ‘조정 신청 중’임을 기사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 및 보도의 공신력이 저하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정보도등 신청 강제 및 정정보도등 신청 통보만으로 당사자 지위를 강제하는 개정안은 피해자의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처분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 조정을 강제함에 따른 사법상의 권리 침해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임.

- 또한 연합뉴스 TV는 정정보도 알림표시 등은 기사의 신뢰도 저하 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별첨 참고자료2 참조)

3. 조정신청시 피해자의 해당 모든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등 대상 조정신청 의무화(안 제18조)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피해자가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보도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 혹은 매개 중인 경우 피해자에게 해당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조정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8조(조정신청) ① ----- ----- ----- ----- ----- ----- 다만,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해당 언론보도를 보도·매개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조정신청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한 오보 확산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조정신청시 해당 언론보도가 인터넷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보도·매개 중인 경우 피해자가 언론사등과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양 측 모두에 조정신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을 강화하고 오보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조정신청시 해당 보도를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한바, 피해자의 절차상 부담 가중 및 의무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각하 가능성 제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관련 협회 등의 신중검토 필요 의견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현행법상 피해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⁵⁾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지 3개월 이내 또는 해당 언론보도가 있는 후 6개월 이내⁶⁾ 언론중재 위원회에 서면·구술 또는 전자문서로 조정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한바⁷⁾,

- 2025.4.10. 기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가 각각 12,513개, 308개⁸⁾에 달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언론보도를 매개하고 있는 모든 인터넷뉴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인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정보도청구 기간보다 짧은 기간인 14일 내에 해당 언론보도를 매개하고 있는 모든 인터넷뉴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을 강화하고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한 오보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는 입장이나, 피해자의 절차상 부담, 의무요건 미충족으로 각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제18조(조정신청) ②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8조(조정신청)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서면 또는 구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8)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시스템 중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조정신청 강제가 피해자의 사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고, YTN은 각 언론사와 계약 체결 포털사 전부에 조정신청 의무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의무 부과와 조정절차 지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참고자료2 참조)

4.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 특칙 신설(안 제23조의2)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조정신청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등의 조정신청 알림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해당 보도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대상 여부인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것임.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 중 일방이 조정 신청 당사자가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조정 신청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상대방에게 그 신청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있음을 통보받은 인터넷뉴스사업자 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현행	개정안
	<u>해당 조정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것으로 본다.</u> <u>③ 피해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방으로 조정을 신청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 삭제요청을 같이 할 수 있다. 정보삭제요청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u> <u>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한 조정 신청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른 임시조치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조정기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u>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관련 알림표시와 관련하여 별도

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무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신청 접수 시 동법 제17조의2를 근거로 ‘언론중재위원회 심리가 진행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게재하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있음.

- 해당 보도에 관한 정보삭제·임시조치의 경우 현행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며,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정보 삭제, 반박내용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고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가 확인되면 지체없이 삭제 등을 하거나, 다툼이 예상될 시에는 30일간 해당 정보 접근을 임시차단하는 임의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¹⁰⁾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에 알림 표시, 상호통보 및 임시조치 대상 보도 여부 확인 등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정보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악성 보도를 차단하는 등 대다수의 뉴스를 유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을 강화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조정 신청만으로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알림표시를 강제함에 따라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정정보도등에 해당되는 보도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제도 남용에 따른 언론의 신뢰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조정신청만으로 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보임.
- 아울러 인터넷상 언론보도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피해 구제 절차에 따르는데 추가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삭제 요청 절차를 두는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필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정보삭제요청 및 임시조치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안 제23조의2 제3항이 인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¹¹⁾제1항은, 정보삭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해당정보 임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헌법상 언론과 편집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등을 반영하여 동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른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44조의7¹²⁾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부처로서 불법정보를 규정하는바, 불법정보 관련 사항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구체 절차에 따르며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온라인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언론보도와 관련한 사항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조정시 기각·각하 및 조정불성립 등 조정신청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 비율¹³⁾임에 따라 향후 당사자 간 2차 분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알림표시의 경우 기사제공 언론사에 대한 알림
표시 의무는 온라인상 오보 확산을 방지한다는 면에서 입법 취
지에 공감하나,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조정 신청만으로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알림표시를 강제함에 따라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정
정보도등에 해당되는 보도로 오해 소지가 있어 제도 남용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나, 현행법 제17조2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직접 청구를 받을 경우 알림표시 및
기사제공언론사 통보 의무가 있으므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
청의 경우에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동일한 의무를 부과
하는 것으로 일부수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현행	개정안	문체부 수정의견
<신설>	제23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 중 일방이 조정 신청 당사자가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조정 신청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상	제23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 특칙)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조정 신청의 당사자가 된 경우 제1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등”을 “조

13) 2024년 기준 기각/각하 374건(청구건의 9.5%), 조정불성립 649건(청구건의 16.5%)로 전체 조정청구건수 중 26%

	<u>대방에게 그 신청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있음을 통보받은 인터넷뉴스사업자 또는 기사제공업론사도 해당 조정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것으로 본다.</u> <u>③ 피해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방으로 조정을 신청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 삭제요청을 같이 할 수 있다. 정보삭제요청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u> <u>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한 조정 신청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른 임시조치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정기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u>	<u>정신청”으로 “청구”를 “신청”으로 본다.</u> <u>(삭제)</u> <u>(삭제)</u> <u>(삭제)</u>
--	--	--

-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정절차를 정보삭제·임시조치와 연결하여 오보 확산을 방지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라 제도 신설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와 공적 사안을 다루는 언론보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 가능한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고,
 - 피해자의 요청만으로 언론보도가 삭제되어, 언론사등에 실질적 방어책 및 구제책이 없으며,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보도에 대해 권리침해정보인지 판단해야 하는 등의 과도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 임시조치 후 이의신청 등 처리절차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위헌논란 여지 존재하며,
 - 조정신청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 언론자유 침해 등으로 2차 분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 「신문법」 제10조14)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자적인 정보삭제 등 조치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는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온라인상 언론보도는 「언론중재법」상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추가로 임시조치 적용하여 기사 접근을 차단할 실익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언론중재위원회는 임시조치와 관련하여 「신문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매개한 기사의 편집할 경우 기사

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공언론사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개정안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언론기사에 대해 입법취지 상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논란 등이 있을 수 있어 적절치 않으며, 특히 현행 임의의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적 검열의 이슈 등으로 실무상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1

언론중재위 사건 처리현황

※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1) 조정

(2024년 12월말 기준 / 단위 : 건)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¹⁵⁾ (%)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15	5,227	940	218	101(2)	710(4)	322	32	2,633	271	77.9
2016	3,170	961	182	118(4)	416(5)	108	19	1,049	317	72.3
2017	3,230	915	72	61	488(6)	122	86	1,234	252	73.7
2018	3,562	1,081	111	89(7)	645(8)	88	12	1,264	272	71.4
2019	3,544	1,129	121	100(6)	734(26)	279	65	932	184	69.2
2020	3,924	1,245	166	99	891(11)	275	34	1,029	185	67.8
2021	4,278	1,221	146	73(4)	894(16)	596	132	838	378	62.7
2022	3,175	949	69	34	684(8)	450	193	686	110	67.6
2023	4,085	1,599	61	34(3)	793(20)	145	113	1,152	188	74.1
2024	3,937	1,452	88	66	649(14)	336	38	1,028	280	72.5

2) 매체유형별 청구현황

(2024년 12월말 기준 / 단위 : 건(%))

연도	청구건수	신문		방송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		기타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2015	5,227(100)	619(11.8)	138(2.6)	892(17.1)	18(0.3)	264(5.1)	2,490(47.6)	799(15.3)	7(0.1)
2016	3,170(100)	405(12.8)	168(5.3)	423(13.3)	16(0.5)	165(5.2)	1,661(52.4)	330(10.4)	2(0.1)
2017	3,230(100)	261(8.1)	119(3.7)	361(11.2)	23(0.7)	206(6.4)	1,842(57.0)	416(12.9)	2(0.1)
2018	3,562(100)	306(8.6)	145(4.1)	331(9.3)	19(0.5)	192(5.4)	2,141(60.1)	421(11.8)	7(0.2)
2019	3,544(100)	357(10.1)	105(3.0)	436(12.3)	12(0.3)	187(5.3)	2,055(58.0)	388(11.0)	4(0.1)
2020	3,924(100)	384(9.8)	122(3.1)	465(11.9)	4(0.1)	247(6.3)	2,102(53.6)	596(15.2)	4(0.1)
2021	4,278(100)	322(7.5)	131(3.1)	495(11.6)	8(1.9)	216(5.0)	2,477(57.9)	609(47.7)	20(4.7)
2022	3,175(100)	234(7.4)	75(2.4)	387(12.2)	6(1.9)	149(4.7)	1,857(58.5)	450(14.2)	17(0.5)
2023	4,085(100)	388(9.5)	99(2.4)	345(8.4)	8(0.2)	218(5.3)	2,491(61.0)	498(12.2)	38(0.9)
2024	3,937(100)	287(7.3)	89(2.3)	317(8.1)	10(0.3)	176(4.5)	2,537(64.4)	473(12.0)	48(1.2)

○ 피해구제율 = $\frac{\text{피해구제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 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계속·기각·각하·계류)}} \times 100$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임

3) 청구형태별 처리현황

(2024년 12월말 기준 / 단위 : 건(%))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정정	1,824	703	69	301	141	23	492	95
반론	825	310	42	111	62	4	236	60
추후	57	18	-	14	2	1	17	5
손배	1,231	421	43	223	131	10	283	120
계	3,937	1,452	154	649	336	38	1,028	280

참고2

타부처 및 협회 등 의견

○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2025.4.2.)	• (임시조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공적책임 강화한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온라인상 언론보도는 언론중재법 상 별도의 피해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추가로 임시조치 적용하여 기사 접근을 차단할 실익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 필요 - 조정신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시조치 부과하는 것은 언론 자유 위축 우려,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언론중재위원회 (2025.3.28.)	• (언론사청구·조정신청의무) 개정안 제17조의2, 제23조의2에서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 간 상호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처럼 일방에 청구·조정신청하더라도 동일한 효과 • (알림표시의무) 언론사 청구, 조정신청 관련 알림표시는 청구사실만으로 보도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언론계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각계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 • (임시조치) 신문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매개한 기사의 편집할 경우 기사제공언론사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개정안 효과 제한됨
한국신문협회 (2025.3.28.)	• (알림표시의무) 언론보도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 신청 중'임을 기사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언론사 편집권 침해 및 공신력 저하 우려 - 조정 대응 과정에서 해당 기자는 시간적·정신적 부담이 가중으로 정치·사회적 이슈 보도 위축 등 언론 본연 기능 약화 우려
한국방송협회 (2025.3.26.)	•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조정신청 의무화) 조정신청 당사자가 늘어나 조정신청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음, 신청인의 구제 수단 선택권 침해 우려 및 절차지연 가능 • (알림표시의무) 신청이 비교적 간단한 조정신청을 남발할 경우 해당 기사 신뢰도 저하 및 기사 작성자 위축 우려

한국인터넷자율 정책기구(KISO) (2025.3.21.)	•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조정신청 의무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정정보도등 신청 및 조정신청을 강제하고, 언론사등의 통보만에 의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당사자 지위의 확정 피해자의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처분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 조정을 강제함에 따른 사법상의 권리의 침해 등의 위헌 소지 • (임시조치) 언론기사에 대해 입법취지 상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논란 등 적절치 않으며, 특히 현행 임의의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적 검열의 이슈 등으로 실무상 시행하지 않고 있음 * ①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는 사인간의 명예훼손 분쟁을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측면으로 사실의 보도 및 여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기능상 부적절, ② 언론보도는 언론중재법상 피해구제제도가 있으며, ③피해자 요청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취하게 되어 게시물 유통 제한을 받게 되는데 언론기사에 대하여도 허용하게 된다면 사회적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언론기사의 유통을 용이하게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
---------------------------------------	--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인터넷상에서 자유와 책임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자율규제 기구로 포털이 설립한 사단법인(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가입)

○ 민간업계 의견

업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방송사업자 (2025.4.2.)	• (MBN)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간 정정보도 상호 통보 의무화 등의 제도 강화는 사업자의 부담 우려 • (TV조선)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사실만으로 포털사이트에 통보 의무화는 언론사의 자율적인 보도 및 편집 권한을 침해, 악의적 이용 우려, 정정보도 청구 관련 언론사와 포털의 상호통보 의무화는 과도한 법적 절차 • (채널A) 조정신청 단계부터 언론사와 포털에 공동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언론사의 공익적 보도 기능을 제한하고 절차 복잡하게 하여 부담 가중 • (연합뉴스TV) 정정보도 청구 및 조정 신청의 표시 등은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보도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수단으로 악용 우려 • (YTN) 각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한 포털사 전부에게 정정보도 등을 청구 의무는 피해자에게 과중한 의무를 부여하고, 조정절차의 지연 발생 우려